

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6. 9. 7.(수) 09:3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성준 위 원 장
김재홍 부위원장
김석진 상임위원
이기주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기에 대한 경례

③ 개회선언

④ 회의공개 여부 결정

-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⑤ 의결사항

가. ㈜LG유플러스 및 유통점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2016-51-191~196)

- LGU+ 및 관련 유통점이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법인영업을 하면서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(안)를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,

- 동법 제4조제5항(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) 및 제9조제3항(공정한 유통 환경조성)을

위반한 ㈜LGU+에 대해 동법 제14조(시정명령)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, 법인영업 조직의 위법행위를 개선·관리하기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을 명하고, 동법 제15조(과징금)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및 관련 고시에 따라 18.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, 동법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법인영업 10일간 신규모집 금지를 부과함

- 동법 제4조제5항(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)을 위반한 58개 유통점에 대해 동법 제14조(시정명령)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,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을 명하고,

- 동법 제22조(과태료)제1항·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(과태료 부과기준) 별표에 따라 과다지원금 지급 위반 건수가 2건 이상인 46개 유통점에 대해 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, 조사에 적극 협조한 10개 유통점에 대해 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,

- 사전승낙제를 위반한 3개 유통점에 대해 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, 조사를 거부·방해한 1개 유통점에 대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⑥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회의는 9월 21일(수) 9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1:22)